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82 | 2025.04.21 (2025.04.14~2025.04.20)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2025.04.14~2025.04.20)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기획재정부>는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총 1,752건의 사업승인, 373건의 규제개선('25.2월 기준) 성과를 이루는 등 신산업 규제혁신의 대표적 플랫폼입니다.

【입법(행정)예고】

<법무부>는 법정이율에서 변동이율제를 도입하고 대화자 사이의 청약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에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등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벤처기업부>는 선진 벤처투자시장 도약방안의 후속조치로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의 행위제한, 전문개인투자자 및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등 투자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빅블러 현상 등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금융지주회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핀테크기업과 협업을 강화하고 금융그룹 내 시너지 창출을 제고하는 등 금융지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일수벌금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총액으로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벌금형의 일수 정액은 피고인의 자산과 1일 평균 수입, 판결 당시 피고인의 수입과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국내에서 발생한 연간매출액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사업자를 원사업자의 정의에 포함하고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국외사업자와 국내 수급사업자 사이의 국내외 하도급거래에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

외부감사의 적용 대상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외에 유한책임회사도 포함시키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2인)」 ,

전산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지 않더라도 국내에 유사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 요건을 삭제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최종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생산실적 기반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일정 요건 하에 환급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4인)」 ,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 소상공인 등이 생산·판매하는 지역상품의 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3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국내대리인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

국내대리인으로 하여금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명령의 이행계획, 이행상황 및 이행결과를 통보하는 업무를 대리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3인)」 ,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의무나 책임을 부과하는 일부 규제 조항에 대하여 그 시행일을 3년 유예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

분산에너지사업자로 하여금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부족한 전력을 현행 전력판매사업자 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이차전지산업의 혁신성장 및 산업역량 강화를 통하여 국가·경제 안보 및 지속가능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상희의원 등 19인)**」 ,

비대면진료의 대상, 방법,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교육위>에서 현안질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외통위>, <농해수위>, <산자중기위>, <국토위> 등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발표(기획재정부) 8
-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 심의의결(국무조정실) 9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1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12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벤처기업부) 12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12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2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3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 14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 14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벤처기업부) 1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6
-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금융위원회) 16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위원회) 17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일부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 17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19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19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20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 등 10인) 20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21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2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22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2인) 22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23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	23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3인) ·····	24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1인) ·····	24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	24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	25
•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2인) ·····	2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4인) ·····	26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	26
•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법안(서지영의원 등 13인) ·····	26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4인) ·····	27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3인) ·····	27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0인) ·····	2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	2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3인) ·····	28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5인) ·····	29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	29
•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여기구의원 등 11인) ·····	30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의원 등 10인) ·····	31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의원 등 10인) ·····	31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	31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 · 신영대의원 등 17인) ·····	32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1인) ·····	32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의원 등 11인) ·····	33
•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상휘의원 등 19인) ·····	33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	34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	34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5인) ·····	3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	35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의원 등 11인) ·····	36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1인) ·····	36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1인) ·····	37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1인) ·····	37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	38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욱의원 등 10인) ·····	38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81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통상관세] 미국 우회수출방지제도 대응 시 유의사항
- [조세] 관세청,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 일제 점검 실시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31 (2025년 4월 3째주)
- [금융] 해외 부동산 펀드의 매각성과보수와 관련하여 투자제안서의 구속력을 부정하고, 수익자총회를 거치지 않은 매각성과보수 변경의 적법성에 대해 판단한 사례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발표 - 재해·재난 대응 3조원 이상, 통상·AI 4조원 이상, 민생 지원 4조원 이상 지원 - 반도체 산업 지원 33조원으로 대폭 확대, ‘26년까지 재정 4조원 이상 투입 -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분의 70% 지원 - 첨단단지 인프라 국비지원 비율 50%까지 확대, 대규모 클러스터 지원한도 2배 상향 - K-반도체 기술혁신 플랫폼(한국형 IMEC) 조성, 우수 인재 유치 적극 지원	2025-04-15
-------	---	------------

기획재정부는 당초 발표했던 10조원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힘.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마련함

① 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입

-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
-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을 반영하여,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를 비롯해 AI 감시카메라, 드론,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

②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조원 이상을 투자

- 관세피해, 수출위기 기업에 정책자금 25조원 이상을 신규 공급
-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릴 계획
-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에도 재정지원을 2조원 이상 확대

③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원 이상을 지원

-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의 ‘부담경감 크레딧’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 신설
- 저소득층 청년과 최저 신용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 2천억원 확대할 계획
- 미국 정부의 품목별 관세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도 기존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재정도 ‘26년까지 4조원 이상 투입할 방침
-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 부담분의 70%를 국가가 부담
-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인프라 국비 지원 비율을 30~50%로 대폭 상향하고, 투자 규모가 100조원 이상인 대규모 클러스터는 국비 지원 한도를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도 과감히 지원함. 첨단 소재·부품·장비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반도체 저리대출도 3조원 이상 추가 공급함. 또한, 실제 양산 환경에 근접한 미니팹을 신설하여 K-반도체 기술혁신 플랫폼(한국형 IMEC)도 적극 추진할 계획임

이번 추경을 통해 팹리스 기업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고성능 AI 반도체 실증장비를 연내 2대 추가 도입하고, 실증사업을 2.5배 확대할 계획임. 국내 신진 석박사 연수·연구 프로그램과 해외 인재의 국내 체류형 글로벌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반도체 아카데미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반도체 우수 인재 확보를 뒷받침할 계획임

국무조정실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 심의·의결

- 6개 부처, 8개 분야로 별도 운영하던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통일성 제고
- 규제샌드박스의 처리속도와 일관성 등을 높여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2025-04-15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을 심의·의결하였음. 규제샌드박스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총 1,752건의 사업승인, 373건의 규제개선('25.2월 기준) 성과를 이루는 등 신산업 규제혁신의 대표적 플랫폼임

그러나 한편으로는, 8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별법에 따라 여러 기관에서 각각 운영하다 보니 운영 절차 및 기준이 다르거나 규정이 없어서 기업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고 활용하는 데 혼선을 겪는 경우가 있었음. 또한, 실증을 승인할 때 실증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부가조건을 부여하여 실증에 차질을 빚거나,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아서 실증이 끝나고 나서 법령정비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음

이에 정부는 8개 규제샌드박스 전체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통일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 작년 12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그 근거를 새로 만들었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1,300여건의 기존 특례 부여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이번에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힘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은 분야별로 운영중인 8개 규제샌드박스가 따라야 할 통합적인 업무지침으로서,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심사, 승인, 사후관리, 법령정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표준화하였음

표준운영지침에 규정한 주요내용을 ‘신청·접수 - 심의·승인 - 실증·사후관리 - 법령정비’ 업무처리 단계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 주요 내용 >

단계	주요 내용
신청 · 접수 ↓	■ 신청과제 중 즉시 규제정비가 필요한 과제는 실증진행보다 신속정비 추진
심의 · 승인 ↓	■ 부가조건 부여 기준과 지양해야 할 기준 및 사례 제시 ■ 동일 · 유사과제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절차, 동일 · 유사과제 판단기준 · 사례 제시
실증 · 사후관리 ↓	■ 부가조건 재검토 · 변경 사유 및 검토기준 규정 ■ 규제부처의 안전성 등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 지표 확정 의무 규정, 데이터 지표 사례 제시
법령정비	■ 법령정비 절차, 법령정비 필요여부 판단 기준 제시 ■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평가지표 및 이용자 편익 등 사회 · 경제적 기대효과 판단에 필요한 평가지표 사례 제시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4-23 시행 예정

연구개발특구에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 실증특례로 지정되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연구개발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 등에 근무하는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체류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477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실증특례로 지정된 경우나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고, 연구개발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에 대하여 1회에 줄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높이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4-23 시행 예정
-----------	--	------------------

신규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 임시허가를 받거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482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신속 처리 대상이 되는 임시허가 사항이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종전에 임시허가를 받거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로 지정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5-04-23 시행 예정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종전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외에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일반게임제공업자·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85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일반게임제공업자·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도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청소년의 폭행·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영상정보처리기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한 경우나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이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여 불송치, 불기소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7-01 시행 예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관련 업무 수행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 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위탁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4-15 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 하여금 그 공사를 도급받은 자(수급인)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발주자와 원수급인(元受給人)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 '3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확대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임금 보장을 강화하고 건설근로자의 고용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7-16 시행 예정

기존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복도 설치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2024년 10월 16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숙박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화재위험성 및 피난안전성을 검토하여 용도변경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되었음을 인정**한 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요건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의 설치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4-15 시행

종전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소유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되는 경우에만 전매행위 제한에 대한 예외를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개시되는 경우도 전매행위 제한에 대한 예외사유로 허용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법무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6. ~2025.05.26.

① 법정이율에서 변동이율제의 도입 (안 제54조)

- 시장이율은 지속적으로 변동하였음에 반해 법정이율은 민법·상법 시행 이후 계속 고정되어 있어, 법정 이율과 시장이율의 차이에 따른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리, 물가 등 경제사정 변동에 따라 법정이율이 변화하도록 하여, 경제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불합리한 이익이나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함

② “表見” 표현의 수정 (안 제14조, 제395조)

- 상법과 민법이 사용하고 있는 “表見”은 우리말에서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법의 “表見代表理事”를 “외관대표이사”로 수정하고, “표현지배인”을 “외관지배인”으로 수정하여 일반 국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도입하고자 함.

③ 대화자 사이의 청약 규정 정비 (안 제51조)

- 상법이 대화자 사이의 청약의 효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민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음. 그러나 상사 거래뿐 아니라 일반 민사 거래 전반에도 대화자 사이의 계약 성립에 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민법 제531조를 개정하여 일반법인 민법에 대화자 사이의 청약에 대해 규정하고, 이와 중복되는 상법 제51조는 삭제하고자 함

④ 민법상 추완이행 청구권의 반영 (안 제69조)

- 민법의 개정을 통해 매수인의 구제수단으로 추완이행 청구권을 신설하고자 하는바, 이러한 구제수단의 신설을 상법에 반영하고자 함

※ 문의처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mailto:법무부_법무심의관실) (전화: 02-2110-3164, 팩스: 02-2110-0325)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4.15. ~2025.05.07.
-------	-----------------	-----------------------------

현재 2024년 한시로 운영 중인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5년에도 동일하게 유지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고, 재산세 비과세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 분리과세 적용 (안 제102조)

- ② 재산세 비과세 대상 범위 명확화 (안 제108조)
- ③ 2025년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안 제109조)

※ 문의처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전화: 044-205-3840, 팩스: 044-204-8969\)](tel:044-205-3840)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4.18.
~2025.05.28.

선진 벤처투자시장 도약방안('24.10.2.)」의 후속조치로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의 행위제한, 전문개인투자자 및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등 투자 규제 개선을 위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요건 완화 (안 제4조제1호)
 - 초기창업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시 최소 투자금액 실적 요건(3년간 1억원→3년간 5천만원) 완화
- ② 개인투자조합 조합원 수 산정방식 개선 (안 제6조제2항제3호)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자펀드인 개인투자조합 출자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조합원 1인으로 산정
-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사후적 지분취득에 따른 행위제한 완화 (안 제9조제1호, 제17조제1호, 제26조제1호, 제37조제1호)
 - 피투자기업의 M&A 등에 따라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등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분을 취득·소유하는 경우 5년 내 처분의무 면제
- ④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의 벤처투자회사 겸영사 지분 처분 유예기간 부여 (안 제17조제3호, 제26조제3호)
 -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의 피투자기업인 창업기획자,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벤처투자회사 등 겸영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지분 취득시 등록일로부터 9개월 내 그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예기간 부여
- ⑤ 창업기획자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 허용 범위 확대 (안 제17조제3호)
 - 창업기획자에 허용되는 경영지배 목적 투자의 요건 중 경영지배 목적 투자의 대상을 직접 선발하거나 보육한 초기창업기업으로 한정하는 규정을 폐지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전화: 044-204-7711, 팩스: 044-204-7719\)](tel:044-204-7711)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4.18.
~2025.05.28.

노후·불량건축물에 무허가건축물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이 보다 원활하게 입안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이에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요건인 노후도 산정 시 무허가건축물도 인정 (안 별표 1)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전화: 044-201-3390, 팩스: 044-201-5532)

국토교통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04.18.
~2025.05.28.

노후·불량건축물로 인정될 수 있는 무허가건축물을 명확히 규정하고,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주민 불편사항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재건축진단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무허가건축물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를 준용하여 규정 (안 제2조의2)
- ②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소방활동, 주차환경, 세대간 소음 등 주민 불편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3조)
- ③ 시장·군수등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구역경계의 위치 및 면적 등을 공보에 고시하도록 규정 (안 제7조)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전화: 044-201-3390, 팩스: 044-201-5532)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4.
~2025.05.26.

최근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빅블러 현상 등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금융지주회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핀테크기업과 협업을 강화하고 금융그룹 내 시너지 창출을 제고하는 등 금융지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 허용 (법률안 제19조)
 -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금융지주회사 손자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경우’를 추가

②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경우 손자회사주식 소유의무 면제 (법률안 제43조의3)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되는 경우 손자회사등 주식 소유의무를 면제

③ 자회사가 아닌 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 완화 (법률안 제44조)

- 자회사가 아닌 '정보통신기술, 그 밖의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산업 또는 금융소비자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금융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업이거나 금융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는 회사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회사(핀테크기업)'에 대한 금융지주회사 출자한도를 15%까지 확대

④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의 업무위탁 규제 완화 (법률안 제47조)

- 본질적 업무 위탁은 사전보고, 본질적 업무가 아닌 업무 위탁은 사후보고체제로 전환하는 등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등간 업무위탁 규제를 완화

※ 문의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전화: 02-2100-2824, 팩스: 02-2100-2849\)](tel:02-2100-2824)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4.14.
~2025.05.26.

최근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빅블러 현상 등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에 금융지주회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핀테크기업과 협업을 강화하고 금융그룹 내 시너지 창출을 제고하는 등 금융지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이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의 자회사 소유 허용 (시행령안 제15조)

-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인 핀테크기업이 업무연관성 있는 투자자문업·일임업자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

※ 문의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전화: 02-2100-2824, 팩스: 02-2100-2849\)](tel:02-2100-2824)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일부개정안

2025.04.17.
~2025.05.0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수범자로서 실질적 하도급 관계의 당사자에 대한 예시를 제시함으로써 법 집행의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실질적 하도급 관계로 인정되는 예시를 명시 (안 II.7.)**

- 기존 ‘건설위탁에 있어 형식적 하도급관계 및 사실적 하도급관계’에 대해 예시하는 조항을 ‘용어의 정의’ 목차로 이동함
- 하도급 관계에 있는 국내 기업들이 형식적으로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실질적 하도급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문의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전화: 044-200-4947, 팩스: 044-200-4977\)](tel:044-200-4947)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2025-04-16 발의

벌금형은 자유형의 부정적 영향을 없앨 뿐만 아니라 재산 박탈의 측면에서 현대 사회에 적합한 형벌이라는 장점이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경제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부담이 되지 않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자력에 따라 형벌로서의 효과를 달리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현행 총액벌금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소득 수준·재산 규모에 따라 벌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하는 논의가 1986년 법무부의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시작으로 지속되고 있음. 일수벌금제란 현행 총액벌금제가 벌금의 총액만을 부과하는 것과 달리 벌금을 일수(日數)와 일수정액으로 구분하여 정한 후에 이를 곱하여 부과하는 제도로, 먼저 범죄행위의 불법과 책임의 경중에 따라 일수(1일 이상 3년 이하)를 정한 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1일당 벌금액(1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을 확정해 양자를 곱하여 벌금액을 산정함

참고로 일수벌금제는 1921년 핀란드를 시작으로 스웨덴(1931년), 덴마크(1939년), 독일(1975년), 오스트리아(1975년), 스위스(2002년)에서 도입하였고 프랑스는 1983년 총액벌금제와 일수벌금제를 함께 채택하였음. 또 기존 노역장유치 기간은 위 내용의 개정에 따라 벌금형의 일수와 연동하도록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일수벌금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총액으로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45조)
 - 벌금형의 일수는 1일 이상 3년 이하로, 일수 정액은 1천만원 이하로 하고 일수 정액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자산과 1일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하되, 판결 당시 피고인의 수입과 재산상태, 유사 직종 종사자의 평균 소득, 부양가족 및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도록 함
- ② 노역장유치에서 벌금형의 유치기간을 벌금형의 일수에 따르도록 함 (안 제70조)

정무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2025-04-15 발의

현행법이 2024년 시행되어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하는 이용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책이 마련되었으나 이용자 증가세, 변화하는 기술 환경 및 운영상 제기된 문제점 등에 따라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됨. 우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거래소로 하여금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변경·폐지하려는 경우에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과 같이, 가상자산거래소 또한 관련 업무 규정 신고 및

공개를 의무화하여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두 번째로, 가상자산거래소가 영업을 종료하거나 중단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해당 가상자산거래소가 보유한 이용자 자산을 반환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 등이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완이 요구됨. 마지막으로, 현행법은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시장의 이상거래에 대한 상시감시 및 대응 조치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필요한 전문성이 담보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시장 이용약관 등에 대하여 신설·변경·폐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 (안 제8조의2 신설)
-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시장의 운영 종료에 대한 업무지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함.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시장 운영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종료 1개월 전에 종료 예정 사실을 금융위원회와 이용자에게 알리고, 금융위원회는 해당 가상자산시장이 보유한 이용자 자산 등에 대하여 이전 및 반환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 (안 제8조의3 신설)
- ③ 가상자산시장 이상거래 감시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인력 확보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2025-04-15 발의

현행법은 원사업자의 정의에 국외사업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역외적용 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해 외국기업이 거래당사자가 되어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현행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해석이 분명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내에서 발생한 연간매출액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국외사업자를 원사업자의 정의에 포함하고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여 국외사업자와 국내 수급사업자 사이의 국내외 하도급거래에 이 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국내 수급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안 제2조제2항제3호 신설 및 제2조의2 신설)

정무위원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2025-04-15 발의

현행법에서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등의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중요정보 사항을 고시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표시·광고하도록 함

그러나 최근 기술발전에 따라 그 위험성도 부각되고 있는 AI 기술 기반의 이미지, 합성영상 등에 대한 명시적인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련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인공지능 이미지 등을 활용한 광고는 실제 제품과 흡사하지만 다른 이미지 등을 쉽게 구현할 수 있고, 소비자로 하여금 실제 제품이 아닌 인공지능 이미지를 실재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소비자로 하여금 제품에 대하여 오인하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활용 사실 등의 중요정보를 같이 표시·광고하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4조제1항)

정무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2025-04-16 발의

현행법의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조치하거나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에 대하여 해임권고, 문책요구 등을 할 수 있음

최근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3개월의 영업 일부 정지 및 임원(대표이사)에 대한 문책경고 등을 통보하였음. 그러나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문책요구 등이 권고에 그칠 뿐이고,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라도 대표이사 연임에 아무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같은 법이나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 조치를 받은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사업자도 동일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이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의무를 위반하여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재조치를 받은 임원은 즉시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하여 금융회사에 준하는 역할과 영향력을 가지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그에 부합하는 책임과 제한을 적용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정무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2025-04-16 발의

가상자산거래소 도산 등의 상황에서도 이용자의 자산은 보호받아야 함.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회사 자산과 명확히 구분하여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도산 시 법원의 해석에 따라 자산 보호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 실제로 2019년 서울회생법원의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관련 사건에서 법원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을 환취권이 아닌 일반채권으로 분류하여, 파산 절차상 해당 거래소 이용자의 실질적인 자산 회수가 어려운 결과를 초래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이용자의 가상자산이 일반 파산재단에 편입되지 않도록 하는 ‘도산절연’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자산 보호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안 제7조의2 신설)**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2025-04-16 발의

23년 11월 전면 금지 이후 1년 5개월 만에 코스피와 코스닥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재개됨.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는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적발이 쉽지 않음. 따라서 해당 행위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된 자의 진술이 수사의 적시성 및 실효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현행법은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경우에 관해서는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을 뿐, 형의 감면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아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의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가보안법」과 같은 개별법에서도 형을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적발 가능성 제고를 위한 유인책으로서 형의 감면 규정을 포함하고자 함 (안 제448조의2)**

정무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2인)**

2025-04-16 발의

현행법은 기업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외부감사인 선임과 역할에 대한 규정을 두어 회계법인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외부감사인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이러한 의무규정의 적용 대상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한정되어 있어 유한회사가 외부감사 의무가 없는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여 외부감사 의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현행법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24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 등 회사형태와 관계없이 자산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금융위원장이 답변했음

이에 **외부감사의 적용 대상에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외에 유한책임회사도 포함**시킴으로써 기업이 외부감사 회피를 위한 방법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호 및 제4조제1항제3호 등)

정무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0인)

2025-04-17 발의

현행법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이하 “전산사고”라 함)으로 인하여 가상자산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그 피해에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의무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산사고에 관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도와 비교하였을 때에 가상자산거래소의 사고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미흡하므로, 현행법에도 위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산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가상자산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8조)

정무위원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2025-04-17 발의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선정하여 조세감면, 금융지원, 보증·보험지원, 입지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산업 및 방역·면역 관련 사업을 해야 하고,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해야 하며,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등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 해외에서 복귀하면 조건 없이 지원하거나 기준 요건을 폭넓게 인정하는 일본, 미국에 비해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실제 2022년도에는 22개 기업만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지난 5년간 신용보증기금의 국내 복귀기업 일반보증 지원 수도 21개 기업에 그치는 등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축소하지 않더라도 국내에 유사 사업장을 신설·**

증설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축소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활성화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3호·제4호, 제7조 및 제15조)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3인)

2025-04-18 발의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 제22조의2에 따라 하도급 거래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지난 '24년부터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여 납품대금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음. 그런데, 이용실태조사가 제도 인지와 연동·미연동 약정체결 여부만을 점검하는 데 그치고 있어 납품대금 연동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약정체결에 따른 실제 납품대금 조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

이에 **납품대금 약정 이행 여부를 조사항목에 포함하여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실태 파악을 강화하고자 함 (안 제22조의2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1인)

2025-04-14 발의

현행법은 가업이 원활히 상속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 규정을 두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인에게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상속 재산가액에서 300억원 이상 600억원 이하의 금액을 차등적으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기업 유치 등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가업상속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600억원을 공제하도록 하여 세제혜택을 확대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2)

기획재정위원회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2025-04-15 발의

현행법에 따라 증류주류는 주정, 탁주 및 맥주와 달리 종가세를 적용받아 주류 가격의 100분의 7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세액으로 산정받고 있음. 이렇듯 증류주류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어 신제품 개발 및 품질의 고급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한편 국산 증류주류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제조업체 대다수가 중소기업임을 고려하여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중소기업이 제조한 증류주류에 대한 세율은 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안 제8조제4항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

2025-04-15 발의

현행법은 발행물과 관련하여 2018년 7월 1일 이후 지출한 도서구입비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에 이어, 2021년 1월 신문 구독 비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였음. 그러나 정기간행물의 경우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로서 공익성이 도서 및 신문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소득공제 혜택 적용을 받지 못하면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정기간행물의 구독료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126조의2)

기획재정위원회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2인)

2025-04-17 발의

현행법은 증류주에 향료, 감미료 등을 첨가하여 만드는 혼성주를 별도의 주종으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증류주 중 리큐르로 분류하여 72퍼센트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혼성주와 리큐르는 도수나 당도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저도수 혼성주는 소비 형태가 맥주나 탁주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종량세가 적용되는 맥주나 탁주와 달리 72퍼센트의 고율 종가세가 부과되고 있어 세율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혼성주를 기타 주류로 별도로 분류하고 발효주에 준하여 3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혼성주의 개발 및 소비·수출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8조제1항 및 별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등 14인)

2025-04-17 발의

최근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청정에너지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자국 내에서 육성하기 위해 세제지원, 보조금, 규제 완화 등 대규모 정책수단을 경쟁적으로 동원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의 설비투자 및 생산기지 이전 압력이 커지고, 국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우려가 커짐

반면 우리나라는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으로 기업의 설비투자·R&D를 지원해왔으나, 납부세액이 부족하거나 최저한세 규정에 걸리는 경우 실질적으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정책 효과가 제한되고 있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내 산업·일자리 기반을 지키려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에서 최종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생산실적 기반 세액공제(국가전략 기술사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신설하고, 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 역시 포함하여 납부세액 부족 등으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일정 요건 하에 환급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략기술 분야 기업들의 설비투자·연구개발·국내생산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즉시 확보하도록 하여 국가전략기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100조의 35 신설 등)

교육위원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2025-04-15 발의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및 학습 등을 위하여 학교 근처에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를 판매하는 자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을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담배사업법」에 따라 ‘연초의 전체 또는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통해 판매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또한 팔 수 없도록 하고, 전자담배 판매가 금지되는 구역을 유치원까지 확대함으로써 담배 및 전자담배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폭넓게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9조제18호)

교육위원회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법안(서지영의원 등 13인)

2025-04-15 발의

한국 사회는 저출산과 사교육이라는 두 가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음.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 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사교육비 지출은 27조원을 넘어섬. 이는 국가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심각한 문제임.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여 공교육 혁신을 추진함.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 맞춤형 학습을 제공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교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임

이에 AI 디지털 교과서의 성공적인 도입과 안정적인 정착으로 학생들에게 맞춤형·자기주도형 교육환경이 제공되도록 하는 디지털 기반 공교육 혁신에 관한 주요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4인)

2025-04-14 발의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및 사업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므로 국내복귀기업의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복귀기업의 인구감소지역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공제율을 100분의 75로 상향하려는 것임 (안 제79조의2)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3인)

2025-04-14 발의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들은 대형 유통업체와 온라인플랫폼의 높은 수수료, 광고비 부담 등으로 인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오프라인 중심의 지역 상권은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

정부는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자 등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소상공인 등이 생산·제조한 상품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채널에서 소개하고 판매하도록 하는 실증특례를 한시적으로 부여하였음. 이에 따라 매출 증가 등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향후 해당 사업의 추진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임

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 소상공인 등이 생산·판매하는 지역상품의 소개와 판매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편성 및 송신하는 지역채널을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안 제70조의3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의원 등 10인)

2025-04-14 발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YTN, 연합뉴스TV)는 여론 형성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방송사로서 무엇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야말로 보도전문채널이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조건임

보도전문채널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은 대표자와 보도 책임자 선임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에서 시작됨. 이러한 과정들은 각 사업자별로 별도로 운영되어 왔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최근에는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노사 간 단체협약 사항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선임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도전문채널들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 선임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고, 보도 책임자의 경우 직원들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0조 및 제21조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2025-04-14 발의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 하여금 법 위반사항 여부 등을 판별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국내대리인의 지정 요건에 국내 소재 외에 그 형태나 운영방식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국내 법인이 아닌 법무법인 또는 페이퍼컴퍼니 등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등 형식적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함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강화하고, 국내대리인의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외 사업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3인)

2025-04-15 발의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유튜브 등 해외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불법정보 등이 유통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해외 사업자의 경우 현행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행정기관의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이에 대해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EU 디지털서비스법에서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 내에 불법정보가 유통될 경우 이에 대응하여 내려진 사법 및 행정기관의 조치명령을 조치하였는지, 언제 조치할 예정인지를 관계기관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내대리인으로 하여금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명령의 이행계획, 이행상황 및 이행결과를 통보하는 업무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32조의5제1항제3호, 제44조의7제6항 및 제76조제3항제4호의3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등 15인)

2025-04-15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용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하려면 신고 또는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런데,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에 지역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상대적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공급할 유인이 적음

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에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채널을 통하여 공급하는 콘텐츠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게 보다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제3항제1호)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의원 등 14인)

2025-04-17 발의

현행법은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사업자로 하여금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사실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 인공지능 관련 안전사고 모니터링 및 위험관리체계 구축,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실시 등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은 AI 관련 행정명령 폐기 및 혁신 중심 정책을 추진 하는 등 EU, 일본을 포함한 전세계적 AI 관련 트렌드가 규제에서 진흥으로 전환되고 있음. 또한, 트럼프 정부 2기에 들어 AI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판단해 통상 갈등의 여지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기업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어 현행법에서 진흥 관련 규정은 우선적으로 진행하되, 규제 관련 규정은 그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의무나 책임을 부과하는 일부 규제 조항에 대하여 그 시행일을 3년 유예함으로써 AI 시대에 발맞추어 인공지능 발전을 촉진하고, 저성장과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안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부칙 제1조)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여기구의원 등
11인)

2025-04-07 발의

현행법은 세계적 식량 안보화 추세, 탄소 중립 등 저탄소 구조로의 축산구조 전환 요구, 전쟁 등에 따른 불시적 수급불안 요인 발생 등 한돈산업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한돈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미흡한 상황임

돼지 생산액은 2023년도 9조 1,127억원으로 농업 생산액의 1위를 차지(쌀 8조 572억원)하며, 주 단백질공급원인 돼지고기의 국민 1인당 소비량이 2013년 20.9kg(쌀 67.2kg)이 2023년 30.1kg(쌀 56.4kg)으로 44%나 증가(쌀 16.1% 감소)하는 등 이미 국민의 주요 주식이 되었고, 돼지고기는 가격 상승 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정부의 통제를 가장 먼저 받는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사료값 등 생산비 상승 등으로 인한 농가 경영의 위기시에 이를 통제·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전무함

현행 한돈 산업을 진흥·육성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축산법」도 환경·방역 등의 규제 위주의 법률로 변질되어 규모화·현대화된 오늘날 변화된 한돈 산업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각 지역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한돈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하여도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미약한 실정임

더불어, CPTPP 협정 등 새로운 시장개방 추진에 따른 국제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 등 환경 문제, IT 등의 신기술 개발 등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한돈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한돈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여, 한돈산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가치 및 주식으로서 자리매김한 식량 안보 등의 공익적 가치를 지속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한돈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농가 경영안정 지원, 탄소 중립 대책, 전문인력 및 후계·청년 한돈인 육성, 국제협력의 촉진 등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한돈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2025-04-14 발의

한국석유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관리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품질검사·시험분석 및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점검·지도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한편 최근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수소 등 새로운 에너지원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유통·품질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관리원의 사업 범위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한정되어 있어, 그간 축적된 품질 및 유통관리 역량을 새로운 에너지원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관리원이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유통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새로운 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25조의2)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2025-04-15 발의

현행법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이 부족한 경우 전력시장이 아닌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부족한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전기사업법」상의 구역전기사업자와 달리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만 부족한 전력을 구매할 수 있고 전력시장을 통해서는 전력을 구매하지 못함에 따라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전력 공급선택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분산에너지사업자로 하여금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부족한 전력을 현행 전력판매사업자 뿐만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분산에너지사업자의 안정적인 전력사업 진출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43조제2항)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의원 등 10인)

2025-04-15 발의

현행법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음

한편,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증가하며 민간사업자도 전력산업의 주요한 참가자로 부상하고 있으며, 발전사업자 수도 확대되어 송·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전기설비의 규모는 기술적 한계, 낮은 주민수용성 등으로 인해 한정되어 있는 실정임. 이처럼 송·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발전사업자가 전력계통 연계를 위해 송·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전력계통에 연계하고 있는(또는 예정인)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함. 그런데 일부 발전사업자는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후발 발전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설비 이용 대가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선하여 발전사업자가 다른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송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해 계통연계가 곤란한 경우 그 전기설비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안 제20조제5항)을 신설하고, 발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다른 발전사업자와 공동이용할 때 부당한 대가 또는 이용조건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안 제21조제1항제7호), 이를 위반한 경우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안 제102조제1항제6호)하고자 하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의원·신영대의원 등 17인)

2025-04-16 발의

현재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질서의 구조적 변화 흐름에 직면하고 있으며 경제안보 중심의 공급망 재편은 지속·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또한,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공급망 안정이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한 핵심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정부는 지난해 9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공급망안정화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대출, 보증, 투자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금의 재원이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발행 등 상환을 전제로 하는 자금으로 한정되어 있어 공급망 위기 예방·대응을 위한 긴요한 자금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 대출 시 이차보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공급망기금의 지원 효과성을 제고하고 공급망 위기 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1인)

2025-04-17 발의

「도시가스사업법」에는 가스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만 9일분의 비축의무를 단독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등 타 사업자는 별도의 비축의무 부담이 없음. 최근 직수입 비중이 국가 수요의 약 20% 수준까지 증가함에 따라 가스도매사업자가 9일분의 물량을 비축하더라도 국가 전체 비축물량 기준으로는 7일분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국가 LNG 수급 대응능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음. 향후 직수입 비중이 확대되면 될수록 국가 비축물량은 점차 감소하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이 예상됨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상 비축물량의 사용은 가스도매사업자 사업용 자산에 중대 손실 발생 등 예외적인 상황에만 가능하도록 매우 경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비축의무량의 효과적인 사용을 제한하고, 실제로는 가용 재고를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도시가스사업법」상의 비축의무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비축의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현행과 같이 **상시비축의무는 도매사업자로서 가스공사가 국가 전체의 비축의무를 부담하되 이에 따른 비용은 수입부과금 등 정부 재원으로 지원하도록 함.** 이와 별도로 **상업적 운영재고를 신설하여 각 사업자는 운영재고 책임을 부담하되, 운영재고 물량에 대해서는 상시 비축의무 물량과는 달리 유연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실질적인 국가 LNG 수급 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10조의10)**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1인)

2025-04-17 발의

국내외적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해야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음. 글로벌 탄소중립 환경규제로 인해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음. 제조업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출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특히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인 RE100은 글로벌 대기업과 바이어들이 공급망 참여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이에 동참하지 못한 기업은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또한, 지방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 인구 유출은 투자 감소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의 붕괴로 이어지는 지방소멸 문제로 직결됨. 지역별로 환경에 적합한 재생에너지원을 찾아 발전하고, 친환경 전기를 소비할 산업단지를 인근에 유치하는 RE100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을 함께 도모할수 있음

이에 정부로 하여금 신규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에대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사업을 보급사업에 추가하여 (제2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RE100 설비 확대를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이상희의원 등 19인)

2025-04-17 발의

이차전지산업은 모빌리티, 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기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기반이 되는 첨단전략산업으로서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에 따라 이차전지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

국내 이차전지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생산부문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중국, 미국, EU 등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원자재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고, 국내 수요 기반이 취약한 한계가 있어 향후 산업 경쟁력의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이차전지산업의 혁신성장 및 산업역량 강화를 통하여 국가·경제 안보 및 지속가능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0인)

2025-04-17 발의

현행법령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약제 급여는 동일제제인 약제(이하 “복제약”이라 한다)가 출시됨에 따라 최초로 등재된 약제(이하 “오리지널”이라 한다)의 약가가 인하되는 구조임

따라서 제약사들의 담합행위로 인해 복제약이 출시되지 않는 경우 환자들의 약가 부담 및 건강보험 재정부담이 완화될 여지가 줄어들게 됨. 그 사례로, 실제 복제약을 생산·출시하려는 회사가 오리지널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부터 국내 독점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그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한 담합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기도 하였고, 담합행위가 이어지는 동안 복제약의 출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약가가 인하되지 않는 결과를 낳았음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약사 등이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한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정한 의약품 판매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이 없는 자가 상한금액 감액에 따른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위해 제조·수입하는 복제약에 대해서는 상한금액 감액 전을 기준으로 상한금액을 책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1조제3항 및 제41조의2제1항)**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0인)

2025-04-18 발의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이후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과 대면진료 이력이 있지만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 등을 위해 현재까지 시범사업 형태로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의뢰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한국보건 의료 연구원에 따르면, 비대면진료를 경험한 환자의 82.5%는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와 비슷하거나 대면진료에 비해 불안하지 않다고 답하였으며, 91.7%는 향후에도 계속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의료인 84.7%, 약사의 67.0%도 향후 비대면진료 이용 의향이 있는 것으로 답하는 등 의료현장과 환자의 비대면진료 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현재 시범사업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형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비대면진료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이에 비대면진료의 대상, 방법,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함으로써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4조의2 신설 등)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5인)

2025-04-14 발의

현행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의 한정된 근로감독관 인력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근로감독이 이루어지는 실정임.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역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의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2025-04-15 발의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을 2023년 기준 38.2%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노인빈곤 해결을 위한 공적연금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 중이나, 대상이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되어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제도 가입 범위를 상시 100명 미만의 사업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상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화 대상을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로 규정하여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보호받기 어려운 실정임

퇴직급여제도 가입 의무 대상을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서 3개월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고,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등 퇴직급여를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제2조제14호 등)

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의원 등 11인)

2025-04-17 발의

국내외적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해야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 있음. 글로벌 탄소중립 환경규제로 인해 무역장벽이 높아지고 있음. 제조업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출환경이 급변하고 있음. 특히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국제 캠페인인 RE100은 글로벌 대기업과 바이어들이 공급망 참여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이에 동참하지 못한 기업은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

또한, 지방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짐. 인구 유출은 투자 감소와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으며, 이는 지역 경제의 붕괴로 이어지는 지방소멸 문제로 직결됨. 지역별로 환경에 적합한 재생에너지원을 찾아 발전하고, 친환경 전기를 소비할 산업단지를 인근에 유치하는 RE100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달성을 함께 도모할수 있음

이에 신규 산업단지, 산업집적지, 산업별 특구 및 산업 관련 지구단위계획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RE100 이행계획을 도입하고 (제66조의2제1항 신설), 국무총리 소속 RE100위원회를 신설하여 관계 부처와 지자체 협의를 지원하려는 것임 (제66조의2제2항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등 11인)

2025-04-17 발의

현행법은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과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채용 심사 단계별

합격 여부에 관한 사항은 고지하지 않고 있으며, 채용광고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등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제한적인 정보만 제공되고 있음

이에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 심사 단계별 합격여부와 불합격 시 그 사유를 고지하도록 하며, 채용광고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채용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조의2, 제4조 및 제10조 등)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1인)

2025-04-18 발의

현행법 및 「퇴직연금감독규정」등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적립금은 비상장주식에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벤처펀드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주요 연금 및 공제회 등이 출자한 벤처펀드는 9.2%~17.2%의 높은 수익률을 실현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적립금도 벤처기업 등 비상장주식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여 운용수익률 제고 및 벤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0조 및 제30조의2)

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1인)

2025-04-14 제출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를 위해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가 재량행위로 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제 설치된 곳이 많지 않은 실정이며, 설치되더라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들이 이용하기에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각종 플랫폼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 협회 외에도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관련 협회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생활물류 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를 위한 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안 제37조제1항, 제40조의2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2025-04-15 발의

현행법은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에서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요구의 적정성에 관하여 정비사업 지원기구가 검증하도록 하는 공사비 검증제도를 두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 대해서는 직접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만 있고, 이후 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에 공개하고 공사비 증액 규모를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최근 물가 상승의 여파로 공사비의 적정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검증한 공사비에 대해서도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는 해당 분쟁은 제외되어 있는바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사비 검증 결과의 조합총회 공개 및 공사비 증액 규모에 대한 조합총회 의결 등 공사비 검증 요청 이후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는 한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대상으로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추가하고, 해당 분쟁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며, 조정위원회의 정비사업 지원기구 또는 시공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을 신설하여 재건축·재개발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시공사와 조합 간 또는 조합원 간의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의제2항·제3항, 제45조제1항제4호의2, 제48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욱의원 등 10인)

2025-04-17 발의

현행법에 따른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는 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소화물배송대행 서비스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함. 그런데, 비인증사업자 또는 비인증사업자와 계약한 영업점의 경우 그 종사자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에 따라 운전자격 확인, 범죄경력 조회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제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이에 비인증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화물 배송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현행법 규제체계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등)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교육위	전체회의	4/25(금) 10:30	- 현안질의
외통위	전체회의	4/23(수) 15:00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 현안질의
	예결산소위	4/24(목) 09:00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체회의	4/24(목) 11:00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국방위	법안소위	4/23(수) 10:00	- 법안 심사
농해수위	전체회의	4/23(수) 14:00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 법안 상정
	예결산소위	4/24(목) 09:00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전체회의	4/24(목) 소위 산회 후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법안 의결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4/23(수) 10:00	- 법안 의결
	예결산소위	4/24(목) 10:00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국토위	전체회의	4/23(수) 10:00	- 법안 의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 현안보고
	예결산소위	4/24(목) 14:00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4/21(월) 10:00	제2차 SW·AI 혁신 포럼 : 소프트웨어 가치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	이해민 의원실 등	의원회관 4간담회의실
	4/21(월) 10:00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 개선 토론회	고동진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4/21(월) 14:00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비대면 진료 시대 : 의료는 더 가깝게! 국민은 더 건강하게!	최보윤·우재준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4/21(월) 14:00	상생을 위한 전문건설업 발전방향 모색 토론회	이건태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4/21(월) 14:00	홈플러스 사태로 본 투기자본 MBK 규제 방안 마련 토론회	정혜경 의원실 등	의원회관 10 간담회의실
	4/22(화) 15:00	지속가능한 이스포츠 생태계를 위한 업계 간담회	강유정·조승래 의원실 등	의원회관 7간담회의실
	4/23(수) 14:00	AI 신기술 융합을 통한 주거 안정과 미분양 해결방안	최보윤·김정재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4/24(목) 10:00	혁신 신약 불평등성 해소 및 규제개선 정책 토론회	서미화·소병훈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4/24(목) 14:00	대한민국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 : 고리1호기를 중심으로	정동만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자료집 등	4/22(화)	「최신외국입법정보」제269호(2025-6호) 발간	국회도서관	
	4/23(수)	「금주의 서평」제725호(2025-16호) 발간		
	4/22(화)	「NABO 재정경제통계 Brief」제13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81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4/14(월)	「Data+」제6호(2025-6호)	국회도서관	
	4/15(화)	「최신외국입법정보」제268호(2025-5호)		
	4/15(화)	「최신외국정책정보」제7호(2025-7호)		
	4/16(수)	「금주의 서평」제724호(2025-15호)		
	4/17(목)	「NABO Focus」제104호	국회예산정책처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2025.04.14.~2025.04.20.)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4/14(월)	통상관세	미국 우회수출방지제도 대응 시 유의사항
4/17(목)	조세	관세청, 덤핑방지관세 탈루행위 일제 점검 실시
4/18(금)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31 (2025년 4월 3째주)
4/18(금)	금융	해외 부동산 펀드의 매각성과보수와 관련하여 투자제안서의 구속력을 부정하고, 수익 자총회를 거치지 않은 매각성과보수 변경의 적법성에 대해 판단한 사례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